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05월 18일

홍은제1동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호	김 *호 1961-08-10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(홍은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5-09